|  |  |  |
| --- | --- | --- |
| **과세서비스 증치세 0세율 및 면세정책**  **적용에 대한 통지**  財稅 [2011] 131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영업세를 증치세로 대체하는 시범방안> 인쇄발부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 [2011] 110호)와 《상해시에서 교통운송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대체하는 시범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財稅 [2011] 111호)에 근거하여 과세서비스에 0세율과 면세정책을 적용하는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시범지역의 단위와 개인이 제공한 국제운송서비스, 해외업체에 제공한 R&D서비스 및 설계서비스는 증치세 0세율을 적용한다.  (1) 국제운송서비스란,  ① 경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여 출국  ② 해외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여 입국  ③ 해외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  (2) 시범지역의 단위와 개인이 증치세 0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상 운송방식으로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제선박운송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육상 운송방식으로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로운송 경영허가증》과 《국제자동차운송 운행허가증》을 취득해야 함과 아울러 《도로운송 경영허가증》의 경영범위에 "국제운송"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공 운송방식으로 국제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항공운송기업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그 경영범위에는 "국제항공 여객․화물․우편물 운송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해외단체에 제공하는 설계서비스에는 경내 부동산에 제공하는 설계서비스가 포함되지 않는다.  2. 시범지역의 단위와 개인이 0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증치세 일반 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면제․상계․환급 방법을 적용하며, 세율은 《교통운송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시행방법》(財稅 [2011] 111호) 제12조 제(1)호부터 (3)호 규정에 따라 적용하는 증치세 세율이며, 간이 과세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증치세 면세방법을 적용한다.  3. 시범지역의 단위와 개인이 0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월별로 세금환급 주관세무기관에 증치세 면제․상계․환급 또는 면세수속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에서 재정부와 협의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4. 시범지역의 단위와 개인이 제공하는 아래의 과세서비스는 증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0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해외 공사, 광물자원에 대한 공사 현장탑사나 탐사서비스  (2) 해외 회의, 전람 서비스  (3) 해외 창고보관서비스  (4) 표적물이 해외에서 사용되는 유형동산의 리스서비스  (5) 이 통지 제1조 제(1)호의 규정에 부합되지만 제1조 (2)호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국제운송서비스  (6) 해외단체에 제공하는 아래의 과세서비스  ① 기술양도서비스, 기술자문서비스, 계약에너지 관리서비스, 소프트웨어서비스, 전기회로디자인 및 테스트서비스, 정보시스템서비스, 업무흐름 관리서비스, 상표저작권 양도서비스, 지재권서비스, 물류의 보조적 서비스(창고보관서비스는 제외), 인증서비스, 감정서비스, 자문서비스. 이에는 계약표적물이 경내에 있는 계약에너지 관리서비스, 경내 화물이나 부동산에 대한 인증서비스, 감정서비스 및 자문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해외 광고서비스.  5. 이 통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1년 12월 29일 |  | **关于应税服务适用增值税零税率和免税政策的通知**  财税[2011]131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根据《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方案〉的通知》（财税[2011]110号）和《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在上海市开展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财税[2011]111号），现将应税服务适用增值税零税率和免税政策的有关事项通知如下：  　　一、试点地区的单位和个人提供的国际运输服务、向境外单位提供的研发服务和设计服务适用增值税零税率。  　　（一）国际运输服务，是指：  　　1.在境内载运旅客或者货物出境；  　　2.在境外载运旅客或者货物入境；  　　3.在境外载运旅客或者货物。  　　（二）试点地区的单位和个人适用增值税零税率，以水路运输方式提供国际运输服务的，应当取得《国际船舶运输经营许可证》；以陆路运输方式提供国际运输服务的，应当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证》和《国际汽车运输行车许可证》，且《道路运输经营许可证》的经营范围应当包括“国际运输”；以航空运输方式提供国际运输服务的，应当取得《公共航空运输企业经营许可证》且其经营范围应当包括“国际航空客货邮运输业务”。  　　（三）向境外单位提供的设计服务，不包括对境内不动产提供的设计服务。  　　二、试点地区的单位和个人提供适用零税率的应税服务，如果属于适用增值税一般计税方法的，实行免抵退税办法，退税率为其按照《交通运输业和部分现代服务业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实施办法》（财税[2011]111号）第十二条第（一）至（三）项规定适用的增值税  税率；如果属于适用简易计税方法的，实行免征增值税办法。  　　三、试点地区的单位和个人提供适用零税率的应税服务，按月向主管退税的税务机关申报办理增值税免抵退税或免税手续。具体管理办法由国家税务总局商财政部另行制定。  　　四、试点地区的单位和个人提供的下列应税服务免征增值税，但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规定适用零税率的除外：  　　（一）工程、矿产资源在境外的工程勘察勘探服务。  　　（二）会议展览地点在境外的会议展览服务。  　　（三）存储地点在境外的仓储服务。  　　（四）标的物在境外使用的有形动产租赁服务。  　　（五）符合本通知第一条第（一）项规定但不符合第一条第（二）项规定条件的国际运输服务。  　　（六）向境外单位提供的下列应税服务：  　　1.技术转让服务、技术咨询服务、合同能源管理服务、软件服务、电路设计及测试服务、信息系统服务、业务流程管理服务、商标著作权转让服务、知识产权服务、物流辅助服务（仓储服务除外）、认证服务、鉴证服务、咨询服务。但不包括：合同标的物在境内的合同能源管理服务，对境内货物或不动产的认证服务、鉴证服务和咨询服务。  　　2.广告投放地在境外的广告服务。  　　五、本通知自2012年1月1日起执行。      财政部  国家税务总局  　　二〇一一年十二月二十九日 |